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7.8.22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 (02-3145-8020)		홍 석 린 팀장 (02-3145-8040)

제 목 : 「8.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

□ 금융위원회는 '17.8.22(화)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,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**강화된 LTV·DTI 규제를 적용**하는 내용의 **5개 감독규정*** **개정안을** (서면)**의결**

* 은행업·보험업·여신전문금융업·상호저축은행업·상호금융업 감독규정

□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**8.2 대책**(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) **시행을 위한 후속조치**로,

○ **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**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, LTV·DTI는 각각 40%가 적용됨

- 다만, **무주택세대,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**(생애최초 8천만원) **이하, 6억원 이하 주택**을 구입하는 **서민·실수요자**의 경우 **LTV·DTI 규제가 각각 10%p씩 완화**됨

○ 한편,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**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**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**LTV·DTI 규제가 각각 10%p씩 강화**됨

○ 또한, 금번 규정 개정으로 **투기지역 소재 아파트**의 경우 **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**됨에 따라,

- 지역을 불문하고 **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**의 경우 **투기지역 소재 아파트**에 대한 **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**

- 다만,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**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**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**대출이 가능**

○ **개정규정 부칙 제3조**의 **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**를 통해

-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(8.3일)의 전일까지 **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**한 차주, 금융기관으로부터 **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** 및 **이에 준하는 차주***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**적용을 배제**

* ①**무주택세대**(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)**의 차주**이면서,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,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**기대이익이 형성**되고,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**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**이 예상되는 경우

□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.23**일부터 시행될 예정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